

2026년 1분기 의회사무처 예산 전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-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(예산의 전용, 이용, 이체)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2 제3항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□ 전용내역 : 1건, 24,000천원

- 전용금액 : 24,000천원
- 전용내역
 - (기존) 「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」 자산 및 물품취득비(405-01)
⇒ (변경) 「의회운영 지원」 사무관리비(201-01)
- 전용사유 : 의장 전용차량 구입 방식 변경에 따른 임차료 예산 확보
 - 전용차량의 의전·공무수행 특성상 주행 빈도 및 관리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, 구입 방식을 '조달구매'(자산 및 물품취득비)에서 '임차'(사무관리비)로 변경 추진
- 전용일 : 2026. 2. 3.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·외 교류사업	의회운영 사업	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	자산 및 물품취득비(405-01)	530,495	-	△24,000	506,495
		의회운영 지원	사무관리비(201-01)	811,126	24,000	-	835,126